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2년에는 사법기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조력내용을 고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14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에 있어 ‘점자 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에는 「한국수화언어법», 2017년에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하여 ‘장애인 관광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다양한 사회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문화 및 관광의 영역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넘어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고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혜리**

4월 이즈음이면 하늘이 봄살을 합니다.

채 떠나지 못한 겨울을 보내려고 하늘도 땅도 봄살을 하며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피워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봄부림이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연의 이치처럼 10년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차별이 드러나고 그것에 저항하는 몸짓과 몸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장애인의 인권의 꽃들이 조금씩 피어났고 오늘날엔 장애인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당하는것에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한시도 장애인이 차별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해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니다. 여전히 굳고 단단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차별받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10년동안 장애인차별에 저항에 왔던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기나긴 역사의 시간속에 장애인차별에 대응하는 역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은 저항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실천해야하는 법입니다. 올해 시행 10주년, 함께해온 많은 분들께 감사하면서 장애인 삶에 장애차별금지법이 매순간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10년전에 넣을 수 없었던 문화관광이 이제는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변화, 장애인의 인식전환, 장애인의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장애인의 인식과 삶의 변화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회적인 발전이 있다 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도 계속 그 범위를 넓히고 확대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문화관광 부분을 더 심층깊게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작년 새롭게 규정된 문화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있는 법조항으로 장애인의 관광 활동 확대에 힘이 될수 있기를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4월 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박 김 영 희**



- 일 시 : 2018. 4. 17.(화), 13:40~16:30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

시 간	내 용
13:40-14:10	○ 접수
<b>1부 인사말 및 축사</b> <span style="float: right;"><b>사회 : 이용근(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b></span>	
14:10-14:20	○ 인사말 : 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축 사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b>2부 발제 및 토론</b> <span style="float: right;"><b>좌장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b></span>	
14:20-14:40	○ 기조발제(20분) • 재화·용역에서의 장애인차별(문화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전윤선(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14:40-15:00	<b>휴식</b>
15:00-16:00	○ 주제별 발표(각 10분) [발표1 (문화)] •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치성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새정부 장애인 예술정책을 위한 주요 이슈 주윤정(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발표2 (관광)] • 장애인관광의 현황 김남진(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관광에서의 장애인차별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정호균(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16:00-16:30	○ 질의응답(전체토론)





- [기조발제] 접근 가능한 관광이란? (Tourism for All)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1
- [발제 1-1]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치성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41
- [발제 1-2] 장애인 문화예술과 공공부문의 역할  
 주윤정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72
- [발제 2-1] 접근 가능한 관광의 과제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5-3
- [발제 2-2] 관광에서의 장애인차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9-4
- [발제 2-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1-6
- [부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5-7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기조발제

# 접근 가능한 관광이란? (Tourism for All)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 접근 가능한 관광이란? (Tourism for All)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접근가능한 관광이란 “이동성·시각·청각·인지적 측면의 결핍으로 인해 관광상품·서비스·환경에의 접근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하게 디자인된 관광상품·서비스·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접근성과 관련하여 특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의 장애물 혹은 문제에 봉착함 없이 휴가 혹은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들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등)의 총체”이다.

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 받지 않으면서 관광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980 Malina선언에 밝혔고 “모든 사람은 관광을 통한 체험과 향유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1999 관광의 글로벌 윤리 강령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 권고 했다. 2013.8.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지침 (resolution A/RES/637(XX) 관광 관련 가장 기본적인 시설(예: 터미널 및 관련 시설, 숙박시설, 식당 등 편의시설, 박물관 등 관광 관련 시설, 관광자원회의시설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권고했다. 또한 2015 접근 가능한 관광 매뉴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명시했다.

UN 장애인권리에 관한 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는 Article 9 (접근성): 정부 당국자는 도시 혹은 비도시를 막론하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 획득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공에게 제공되는 기타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rticle 30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 정부 당국자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

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다.

국내 법률에서도 다양하게 장애인의 관광권을 보장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법률 제12689호, 2014.5.28. 일부 개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5.28.]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5.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9.19.][시행일 2018.3.20.]

※ 관광활동: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1. 물리적 접근성 제공
2. 접근성 관련 정보 제공
3. 종사원 교육·훈련을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 4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 국내 조례 입법 사례

○ 2018년 1월 현재 각급 자치단체의 관광약자지원조례를 제정 연도별로 보면, 제주도(2013. 5. 15), 부산시(2016. 8. 3), 전남(2016. 12. 29), 경기도(2017. 6. 13), 목포시(2017. 4. 10), 전북(2017. 9. 22), 인천시(2017. 9. 25), 나주시(2017. 9. 29), 곡성군(2017. 10. 11), 경북(2017. 10. 19), 광주시(2017. 11. 1), 서울시 중구(2017. 11. 1), 영광군(2017. 12. 26), 부산시 동래구(2017. 12. 26), 속초시(2017. 12. 29) 등 15곳임. 이 중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8건이고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7건임. 용인시 관광약자조례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제주, 부산, 전남 조례를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음. (윤삼호 글 발췌)

#### ▪ 시도별 관광약자지원조례 비교

	제주 조례	부산 조례	전남 조례
조례명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일	2013. 5. 15	2016. 8. 3	2016. 12. 29
주무부서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과
규칙 유무	있음	없음	없음
목적	상위법 근거 없음	상위법 근거 없음	상위법 근거 있음 (「관광진흥법」 제47조)
정의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 “복지관광”	“관광약자”	“관광약자”
책무	없음	있음(단체의 책무)	있음(기관의 책무)
기본/추진 계획	매년	매년	5년 마다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증진법 관광시설</li> <li>교통약자법 관광시설</li> <li>제주 관광진흥조례가 규정한 관광사업</li> <li>제주 공공관광지 조례 공영관광지</li> </ul>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증진법 관광시설</li> <li>교통약자법 관광시설</li> <li>관광진흥법 관광사업</li> </ul>
관광 인증제	있음	없음	없음
자문위원회	있음	있음	있음
관광환경 조성사업	있음	있음	있음
센터 설치	있음	없음	없음
제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환경 조성사업</li> <li>관광센터 운영</li> </ul>	관광환경 조성 사업 수행 법인, 단체	관광환경 조성 사업 수행 기관, 단체

여행은 돈을 벌기위한 목적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일정한 시간동안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며 그 지역의 고유하고 뛰어난 자연문화 인위적 자원들을 보고 즐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여행활동에 있어 현실은 팍팍하고 여행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여행함에 있어 정보의 접근과 현장 접근, 이동, 숙박, 식당, 화장실, 여행지 동선 등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 여행에 있어 필요한 조건

범주		내용
관광시설 및 목적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과 승·하차 지역은 가능한 한 건물입구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차량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
	표지판	·정보, 체크인, 티켓 데스크는 반드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최대한 입구 근처에 위치 ·안내표지판은 시각, 음성표지 모두를 갖추어야 함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구는 충분히 큰 크기의 이해 가능한 심볼로 표시되어야 함
	엘리베이터	·휠체어가 진입하여 쉽게 돌 수 있게 충분한 공간 확보 ·감각장애인들이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함
	공중전화	·높이, 이동성문제 혹은 감각문제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공중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보통 화장실과 동일하게 위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가격	·장애인 시설 이용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특정시설에 요구되는 사항	터미널, 역 관련시설	·이동성 장애가 있는, 특히 휠체어 사용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시설 구축 ·터미널은 접근경사로,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 제공 ·정보는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시각,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 및 시각신호를 가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함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함
	숙박시설	·호텔 내 적당한 수의 객실은 도움 없이 전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해야 함. ·이들 방은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쉽게 이동, 머물고, 소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함. ·응급상황에서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람 시스템 ·복도 및 이동 동선은 휠체어 2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이상의 권고사항은 캠핑시설에도 적용함. 특히 알람 뿐 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 시설은 갖추어야 함.
	식당 등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접근이 용이하고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구디자인이 되어야 함.



범주		내용
	박물관, 관광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로 수평, 수직적으로 이동성이 제한된 방문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li> <li>·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정보전달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li> <li>·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을 받아야 함. 특히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함.</li> <li>·휠체어 대여와 같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li> </ul>
	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장애, 감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li> <li>·장애여부를 떠나 인식 가능한 표지판 설치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함.</li> </ul>
	회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휠체어 사용자/청각장애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및 보조기구 확보가 필요함.</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도로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함.</li> </ul>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2-2021)을 수립하고 여행이 있는 삶 일상이 여행이 되는 삶을 위해 다각도로 제도를 정비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욕구를 담보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생활 관광환경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관광확산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100곳의 열린 관광지 조성을 사업을 실행해 취약계층 우수관광지 인증제도, 관광 볼런티어 제도, 바우처 제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시설의 무장애화 추진, 장애인 특성 별 관광 도우미 및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시행 할 계획이다.

▪ 전국 열린 관광지

연도	장소	개소
2015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케이블카 등	6개소
2016년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여주시 오동도,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5개소
2017년	정선 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울산 태화강 심리대숲,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양평 세미원, 제주도 천지연폭포	7개소
2018년	아산 외암마을, 갯골생태공원, 망상해수욕장, 무주 반디랜드, 함양 상림공원,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온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부여 궁남지, 해양공원(이순신광장, 하멜전시관, 자산공원, 진남관), 영광 백수해안도로,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이다.	12개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정착화 되어 가면서 집단(생존)의 욕구에서 개별(문화)의 욕구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연금법, 활동지원법, 교통약자 이동지원법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여가 문화 욕구에서 점점 확장성을 띠고 있다. 여가 활동 중 문화·스포츠 활동은 제도와 예산의 확충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 관광 현황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접근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해 예산지원의 근거가 희박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인식의 부재로 장애인 관광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 상황은 국내와는 사뭇 다른 실정이다. 유엔관광기구(UN WTO)에서는 유엔관광기구(UNWTO)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선언하며, 각 국에 ‘모두를 위한 관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5년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핵심요소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관광’ 축진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3년 총회에서도 ‘접근가능한관광(Accessible Tourism)’을 실천할 것을 각 국에 권고한바 있다. 세계 장애인 인구가 11억 명에 이르고, 고부가가치 시장인 노인관광(실버마켓)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까지 포함할 경우 전략적 틈새시장으로 가치가 충분하다.

국내에서도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관광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미비한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30만명에 이르고 관광진흥법 개정('14. 5월)으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했으나, 경제적 지원(여행바우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지원 조례 제정('17.1.5.)했고 부산과 제주, 대구, 수원 등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관광의 권리 향유를 급속도로 확장되어가는 욕구이지만 제도나 예산 지원은 현실성 없는 실정이다.

제도의 미비는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 등이 여행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의 선택 제한과 이동과 접근, 여행상품 등은 관광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고 제한된 관광활동은 관광시장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하면서 일반 관광객과 비용지출 면에서 현격하게 적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반 관광객 보다 많게는 1.5배는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현상을 특수차량 렌트와 접근 가능한 숙소, 식당,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성수기 관광은 두배에서 세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날자에 관광하기란 쉽지 않다. 봄·가을

관광주간에 온 국민이 관광방학이라고 할 만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을 권장하고 여행방학기간에 전국은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관광주간은 또 다른 차별의 형태로 발생한다. 관광주간 같은 특수성에 장애인이 참여하면 벌어지는 차별 형태는 이동, 숙박, 식당, 화장실, 관광지 접근성 등 다양하다.

####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필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하는 미래의 잠재 관광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세계인이 관광하기 좋은 곳을 7위에 올랐다. 도쿄보다 무려 2단계 앞선 도심여행 메카다. 하지만 관광약자에게도 여행하기 좋은 서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해 봐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일상화·나 홀로·인생샷...내년 여행트렌트 'S·T·A·R·T'로 관광공사, 소셜빅데이터·관광전문가 의견 종합 분석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2018년 여행트렌드를 S(Staycation)·T(Travelgram)·A(Alone)·R(Regeneration)·T(Tourist sites in TV programs)로 14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소셜과 포털 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관광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한 것이다. S(Staycation·여행의 일상화·근거리여행), T(Travelgram·여행스타그램·여행주간), A(Alone·혼행·휘게라이프), T(Tourist sites in TV programs·여행예능·드라마촬영지),(연합뉴스)

하지만 관광전문가들의 분석에도 관광약자의 대한 욕구는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관광선진국의 경우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의 관광욕구 조사에서 관광약자를 포함시킨 빅데이터를 내놓고 있다. 관광약자의 욕구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은 관광시장에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고객층 이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관광약자 대부분은 연금 등의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광활동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과 휴일, 연휴, 휴가 같은 관광시즌을 피해 여행하기 때문에 비성수기에 중요한 고객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상품과 서비스, 물리적 접근성은 안정된 고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발제 1-1

##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치성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장애인 문화예술의 정치성, “실패하는 연습실, 삶을 살아보는 리허설, 세상을 바꾸는 투쟁” 1)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sup>2)</sup>

## 1. 이토록 정치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현장

장애여성 배우가 무대에 오른다. 발달장애인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

어떤 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다른 이는 새로운 몸의 등장에 열광하거나 감동하여 극찬한다. 누군가는 장애로 인해 기술연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아무래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노래와 연기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다른 이는 기대 이상보다 잘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보긴 어렵다고 아쉬워 한다. 유명 장애인 예술가 라는 누군가는 장애인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로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감상과 논평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장애인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선 정상과 비정상, 감동과 정치, 예술과 재활(또는 치료), 전문성에 대한 입장차이 등의 복잡한 소통이 오간다.

치료, 치유, 사회통합, 교육, 극복, 취미, 여가, 직업교육... 마치 우산 개념처럼 장애인 문화예술

- 1) 이 글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국제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장애인 문화와 권리'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2)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 인권운동 단체로서 장애여성의 몸과 경험이 '장애'로만 환원되는 것을 비판하고 장애와 성별이 교차하는, 독자적인 운동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나는 이곳에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비장애여성 이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는 장애여성공감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로 창단 열다섯 해를 맞이한다. 가족, 독립, 시설, 섹슈얼리티, 예술, 발달장애 등을 주제로 빚어낸 이야기가 수편이며, 매해 공연을 올린다. 예술영역의 주변인으로 머물던 장애여성이 연극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장애여성문화운동의 정치성으로 장애여성의 몸이 가지는 예술적 상상력, 자조적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걸 망설이지 않는다. 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력이 없는, 이상한... 부정적인 평가와 시선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장애여성 배우들은 예술의 행위자로 사회의 변화를 위한 무대 안팎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이 안에서 기획, 배우, 연출을 거치며 함께 해 왔다. 장애여성의 삶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공연은 특수한 인권현실을 드러내면서도 소수자의 인권, 인간 보편이 경험하는 인권의 문제들을 넘나들면 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활동은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치유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 사회통합과 같은 공익성을 띄기도 한다. 하지만 왜 유독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는 치유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인가. 왜 장애인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 이어야 하는가. 기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만드는 사회구조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위여선 안 되는가. 설마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접근이 장애인 문화예술은 이미 ‘장애’가 있다고 한계를 설정하여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사회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읽고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 질문을 지나지 않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한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권의 눈높이는 장애인 문화예술,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해석과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해요’ 라는 말 이면에는 ‘장애=무능’이란 편견이 깔려 있다. ‘장애가 있지만 이만큼 했다’ 라는 관점은 장애극복 서사에 가깝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이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환경, 정치적 위치, 장애인의 몸과 경험이 던지는 독특한 표현양식과 주제의식을 통합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 장애인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장애인, 장애인 예술, 그것을 접하는 대중, 장애인이 창작한 작품,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 독립적인 주제들이 아니란 말이다. 몸, 예술, 젠더와 섹슈얼리티, 노동, 활동보조, 발달장애, 교육권, 탈시설 등 인권 현실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을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권리가 전혀 이야기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위 질문들을 충분히 전제한 토론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장애인차별에 맞서 싸우며 문화운동을 하는 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미, 예술적 독창성, 인권의 하나로써 장애인 문화를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글은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배우들과의 창작 작업과 인터뷰를 토대로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예술 작품을 생산(창작)하는 과정에서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흐름과 장르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인정받기 위해선 권리로써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 2. 차별받는 몸, 장애재현과 해석의 정치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 “원숭이 같은 여성”으로 프리쇼(기형인간 쇼)에 출연하고, 사후에도 100년 이상 방부 처리된 시신이 순회 전시된 홀리아 파스트라나가 라는 여성이 있다. 해부학적으로 분해하고, 괴물로 묘사되며 사람들의 볼 거리로 전시해 왔던 프리쇼는 장애와 다른 몸에 대한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화적 타자화의 과정을 드러내주는 역사다. 이에 대해 로즈마리 갈런드 톰슨은 <보통이 아닌 몸>에서 “심한 선천적 장애인들의 몸은 언제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안, 혁신, 환상을 배출하는 아이콘 기능을 해 왔고, 기형인간과 놀라운 인간들은 사회가 이들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인간성을 결여한 오로지 몸뿐인 존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괴물’ monster를 의미하는 라틴어 monstra는 원래 ‘표시’를 의미하였으며, ‘보여 주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demonstrate의 어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을 사거나 팔며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프리쇼는 사라졌다(고 한다). 그럼 전시장과 무대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던 장애인은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까? 여전히 기존 상업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불행한 존재, 천사, 희화화의 대상, 천재, 범죄자 등 몇 가지 이미지로 재현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 배우가 역사극, 연애극, 모험극 등에 나타나 역동적인 삶의 주체로 나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극중 장애인 역할은 비장애인이 ‘잠정적으로’ 장애인이 되어 캐릭터를 연기한다. 대중들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이 연기는 불편하지 않지만, 장애인의 ‘연기’는 불편하게 느끼며, 장애로 인해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프리쇼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다르게 묘사된다. 장애남성의 경우는 기존의 성규범을 수행하기 어려울지라도 적극적인 주체로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진다. 영화 ‘섹스볼란티어’(2011)와 ‘세션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2013)에 등장하는 중증장애남성의 이야기가 그 한 예다. 영화는 장애가 있지만 성적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거나, 남성으로서 가지는 매력, 가능성, 성적 욕구 등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키며 장애 ‘남성성’을 강조한다.

반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수동적으로 그려지거나 성적대상, 성폭력의 대상에 머물게 둔다. 이것은 기존 사회가 이원젠더체계에 기반해 남녀 섹슈얼리티를 그리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남성은 기존 남성질서의 진입을 열어두며 동등한 시민성을 강조하지만(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여성은 취약성을 강조하며 성적권리와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재현에서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에 대한 불안은 관계에서 만들어진 경험적인 것이8 아니라, 근대사회의 시작으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된 역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내재된 불안과 조바심이다.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감각이다. 장애인은 누구이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어떤 식의 고정된 이미지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하는데, 이는 장애재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이데올로기 재생산 도구로서 장애재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장애를 재현하는 공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니 장애재현에 개입하는 정치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주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 기대어 구성된)장애특성만으로 콘텐츠와 캐릭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한계적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애재현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해석으로 사회적 차별을 짚어낼 수도 있다. 결국 장애재현과 해석,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모두가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 3. 보여지는 몸\_장애여성의 예술하기, 예술가 되기

질병이나 장애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재현되지만 ‘보여주는’ 주체가 되긴 어렵다. 이야기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을 드러내기 보다는 치료와 극복담론, 감동의 서사를 오가며 질병과 장애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공고히 한다. 푸코의 말처럼 몸은 사회적 통제가 직접 행해지는 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아픈 사람은 정상성 신화, 의료와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타자화 된다. 건강한 몸을 이상화 시키고 반대편 자리에 질병과 장애를 위치시킨다. 질병과 아픔은 때론 임상과 의학전문서적에서 치료의 성과로 도구화된다. 장애를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수술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거나 실패했던 기억이지만 한편에서는 탁월한 치료법으로 소개된다. 의료회는 의학 안에 장애의 경험을 가두거나 몸의 불/기능성만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몸의 경험을 지운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상상하기 어렵게 한다.



(춤추는 허리 정기공연, 거북이 라디오3, 2016)

장애여성은 몸의 차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여지는 위치에 놓여지곤 한다. 일상적으로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드러내놓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거리를 나갈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 방송은 장애를 가진 몸을 측은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몸에 대한 통제가 장애여성만이 경험하는 억압은 아니다. 자본의 이해에 따라 노동자의 신체는 그에 적합한 외향뿐 아니라 감정적 적격성도 갖춰야 한다. 건강하지 않은 몸, 질병이 있거나 손상된 몸, 나이든 몸, 여성/남성답지 못한 몸, 트랜스젠더의 몸, 뚱뚱한 몸... 모두 비정상적인 몸이다.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이야기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고 쓰여 졌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는 공연을 만들 때 늘 이점에 주목한다. ‘보여주는’ 주체가 되기 어렵고 ‘보여지는’ 존재들이 겪는 삶의 경험을 ‘보여주고’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 공연 제작의 목표다. 늘 대리되거나 온전한 소통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받기 어려운 언어장애가 있는 배우는 언어 전달력을 가져야 하는 연극 공연에서 더욱 도전 받는다. 때론 의성어, 의태어, 단음절로만 감정과 이야기를 엮는 것을 시도했다.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장애인이 가지는 언어전달력의 한계를 언어(인간의 말)의 한계로 전복하여 고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의 연습실을 잠시 들여다 보자.

말을 하고 소리를 내는 행동은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에너지와 집중력을 덜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여성의 경우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전후 동작과 긴장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뇌병변 장애여성은 오랜 세월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서 어떤 타이밍과 방식으로 소리내는 것이 자신에게 편한 것인지 알고 있다. 나는 이런 행동이 무대

에서 비장애인 배우가 발성을 위해 훈련을 거듭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애여성 배우는 연습과 소리내기의 방식이 그와 다를 뿐이다. 이 점을 포착한다면 장애여성 배우들의 기술적 연마를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여성의 예술하기는 이처럼 장애여성의 무대 언어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고통스럽지만 의미있는 시간이다. 또 장애여성의 예술가 되기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라고 여겨졌던 몸과 행위들에 대해서 반문하는 과정이다. 예술가라고 상상/인정되는 사람과 작품에서 지워진 장애가 있는 몸들의 존재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이번엔 무대로 가보자. 무대라는 공간에서 배우는 여전히 정형화된 이미지와 몸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몸은 ‘정상적’인 신체를 상징하고 있으며, 관객 역시 그러한 배우를 상상하고 기대한다. 장애여성 배우의 경우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형화된 몸의 기준과 억압이 한층 더 복잡하게 작동된다. 설사 아름답고 튼튼한 몸에 대한 압박이 약하더라도 민첩하게 움직이고 크게 소리를 내는 단련된 배우의 몸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은 남는다. 따라서 무대 위에서 장애여성 배우는 복잡한 맥락 안에 놓여진 자신의 몸을 경험하며, 넘어서야 하는 편견과 억압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인식할 때 무대에 서는 행위는 사회가 기대하는 이미지를 거부하며, 장애와 권리를 이야기하는 움직임은 사회에 대한 저항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여성 예술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이야기가 쓰여져야 하는 이유이며, 장애인 문화예술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다.

#### 4. 실패하는 연습실, 삶을 살아가는 리허설, 세상을 바꾸는 투쟁

새롭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생산하고, 장애가 있는 몸으로 연기양식을 고민하고, 무대연출을 재구성하며 기획과 연출에 참여하는 것, 문화생산의 주체로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몸이 위계화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며,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을 만드는 권력구조는 소멸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 제도 안팎을 넘나드는 장애인 권리 투쟁이 유효하듯, 무대 위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투쟁중이다. 무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이 연기가 되거나 오브제가 되기도 하며, 소통을 돕는 자막을 무대장치로 적극 활용한다. 연출과 기획의 역할을 익히고, 협력하며 일상 연습을 꾸려 나간다. 또 비장애인다움을 흉내내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 역할을 넘나들며 장애인다운, 비장애인다운 몸과 이미지에 균열을 내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도전의 과정들은 무대 안팎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실천이다.

“(공연창작 워크숍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라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해요. 재활원 선생님들은 내가 똑똑해 졌다고 하고.. 밖에 나가면 대부분 뭔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해요. 옛날에는 말도 잘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 걸로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말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이에요.“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A 인터뷰)

“아 이상하게 몸이 여기 와 있어. 약을 먹어서 너무 힘든데, 이상하게 몸이 여기 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B 인터뷰)

그저 취미나 아마추어 발표로 보이는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진지한 정치적 선택이다. 무대에 수년째 오르는 장애여성 배우 A는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대리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통제를 경험했던 과거는 그가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게 했다. 삶을 옮겨다 놓은 모형 같은 연습실과 무대는 실패를 연습하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대사를 외우지 못하거나 동선을 틀리기도 하고 동료와의 관계는 어그러진다. 그러나 갈등을 빚고 긴 시간을 두고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관계이자,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연습시간을 지켜야 하고 최대한 많은 배역에 충실해야 한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다. 나 다운 내가,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의 연습실)

이른 바 사회화, 인간관계, 역할수행 이라는 것이 A의 삶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차별적인 사회에서 장애인의 실패의 탓은 곧바로 장애로 돌려진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실패와 사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주변인들은 기회를 미리 차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습실에서 제대로 된 연습이 이루어지는 날 보다 갈등하는 날이 더 많을지라도,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표현하고 충돌하는 시간은 의미 있다. 성공한 연습이 아니더라도 연습실로 몸을 옮기게 된다. 내가 원하는 관계와 일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나의 이야기를 담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은 피로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습실을 찾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완성을 향해 가는 실패의 연습실...

휠체어에서 내려와 내 몸의 일부라는 휠체어를 다시 바라보며 가벼운 자유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까? 처음으로 다리의 보조기를 벗은 몸으로 춤을 추던 날에 그녀는 보조기를 처음 착용했던 날의 자신과 어떻게 만나고 있었을까? 서로 다른 속도와 높이로 걷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며 과연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있었을까? 진행되는 장애와 그로인해 앞으로 계속 변할 내 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우리의 공연을 볼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분명한 것은 연습의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순간에도 배우들은 몸을 움직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헤매고 고민했다는 것이다. 연습실에서 반복했던 행위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찾아나가던 시간이었으리라.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어서 그 장소와 공간, 시간 안에서만큼은 딱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 안에서 만큼은 내가 너무 명확해져요. 내가 계획한 ‘나’로 살 수 있죠”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C 인터뷰)

자신의 기획대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경험,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다. 무대에서 처음과 끝의 주도권은 온전히 내 것이다. 거리의 시선, 텅 빈 지갑, 교육받지 못했다는 소외감, 아침이 와도 갈 곳이 없었던 하루. 창작과정에서 매일 반복되었던 하루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특별하다. 말하기를 통해 개인적 경험이 사회적 것임을 발견하고, 분노한다. 이것은 공연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가 제한하는 정상적인 몸의 가치에 대한 거부 의 몸짓이기도 하다. 나의 모든 경험이 연극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이의 경험에서 내 이야기를 본다.

춤추는 허리는 실전에 강하다. 나는 공통된 몸의 경험과 인식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무대라는 실전은 현실세계의 축소판으로 공연이 시작될 때 배우들은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영역의 주변인으로만 머물던 장애여성이 연극 생산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과정은 정상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변화를 위한 운동이다. 본무대는 리허설이며, 삶은 실전이다. 실전은 언제나 투쟁의 일상이다. 무대 안에서 느낀 자유로움은 무대 밖 삶과 이어지며 치열함을 위한 힘을 준다. ‘비정상적인 몸’이라는 규정을 벗어난 무대안팎의 장애여성 배우들의 몸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으로써 삶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이야기를 써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무대에 서는 이유다.

## 5. 장애인 문화, 결국 인권의 문제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챙김을 받는 것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살피고 다가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였고 공적인 언어선택을 하는 것도 서로의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언어장애 특성상 못 알아들었을까봐 같은 얘기를 강한 어투로 말올 하거나 반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기도 한다. 이럴 땐 서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전달하려는 건지 모를 때가 생겨나기도 했었다. 이것도 소통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우린 함께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려고 이야기를 나눈다. 왜냐하면 장애여성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이걸) 썩은 복지 때문일까..”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장애여성 배우 D의 인터뷰)

결핍과 무능,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라고 장애인을 생각하는 나라에서 평등한 동료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협소하고 강제된 선택에 몸을 맞추어 살아갔던 장애여성 배우들에게 차별의 경험은 익숙하다. 반면에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 주장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극단에서 연출을 담당하는 C는 이것은 공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때론 이 특징들이 한계가 되기도 하고 앞서 강조한 것처럼 역설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배우로서 관계 맺기와 창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썩은 복지’ 인가라는 자조 섞인 말은 장애인을 주체적인 시민으로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공연을 만들어 내는 과정의 갈등이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제야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나’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왜 최고로 잘하지 못하나가

아니라, 왜 이제야 이런 경험을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다.

배우들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이다. 스스로 장애여성 예술가라고 자부하지만 공연수익은 턱없이 적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낮다. 매월 100만원 안팎의 정보보조금으로 생계를 잇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삶을 산다. 노동할 수 없기 때문에 월 100만원 은 가치가 큰 돈이지만 존엄함과 맞바꿀 수 있는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위해 장애여성 배우들은 존엄함을 잠시 포기한다.

“사회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개별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면 나라에서 당연히 복지정책으로 살려내는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가 세금을 직접 내는 게 많진 않지만. 모두가 살 때마다 10%씩은 내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당당 할 텐데, 내가 체감적으로 (세금 많이 낸다고)느껴지는 건 없으니까. 받기만 하는 이미지로 지속되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진 못하지만, 내가 무능한 것 같진 않은데, 그건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수급자라는 것만 이야기되니까. 나뿐만 친구와 가족들 모두가 수급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정말 이상하죠.”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F 인터뷰)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도 생계부양자 모델로서 장애인은 애초에 상상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일방적 돌봄의 존재가 된다는 정책의 발상은 잘못됐다. 이런 발상은 많은 제도들이 구축되어도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복지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여성 단원들은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부담한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머리와 몸을 움직여 일하고 생산하는 노동의 과정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행위들은 치료, 사회통합이라는 답답한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서의 제 가치도 인정받지도 못한다. 물론 이것은 한국사회 비장애인 예술가의 낮은 권리와 처우와도 연동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비장애인 예술가의 권리가 증진되면 장애인 예술가의 처우도 달라질까? 예술의 인간 자유의 지평을 넓히는 행위라고 해도 장애인의 예술을 그러한 활동이 하나로 사회가 인정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 6. 정상성에 도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운동

쉬운 창작은 없다. 그러나 열심히 연습하지만 한 치의 오차 없는 휠체어 동선과 연기를 위한 기술 연마에 집중하진 않는다. 프로다움, 전문가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춤추는 허리가 집중하는 방향은 조금 다르다. 무대 밖의 시간을 무대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삶의 경험들을 쏟아내려고 더 많이 애쓴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특별함’에 머물지 않고, 동정이 아닌 연대의 공명으로 울리길 바라며 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아마추어 같은 이 모습이야말로 프로 이야기꾼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다. 연습시간은 길고도 짧다. 천천히 빠르게 하지는 독촉은 실은 기다림의 다른 말이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정기공연, 불만폭주 라디오, 2017)

처음으로 춤추는 허리가 공연을 올릴 준비를 할 때 무대공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비장애인의 연극을 흉내 낼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흥내내기 자체가 쉽지 않았음은 물론 무의미 했다. (모든 흥내내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대에 서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몸이 가지는 한계와 제한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을 만들어 내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달았다.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 종횡무진 움직임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극장의 물리적 구조,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장애와 속도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며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공연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지워져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존의 연극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맞는 몸짓과 대사 전달 방식을 찾아야 했다. 배우의 역할을 넘어서 연출, 기획 무엇이든 닦치는 대로 경험하고 깨져야 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여성 배우를 다시 기억하자. 장애여성 배우의 연기를 미학적, 정치적으로 새롭게 읽으려면 좋은 발성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장애여성 배우의 좋은 발성은 비장애인 배우처럼 기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언어장애를 통해 터득한 독특한 감각과 자기 발성을 그와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주제 의식에 담아내는 것이다. 이때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흥내내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술적 행위의 기준과 한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의 전문성은 이러한 정치성을 견지하며 정상적 규범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얼마나 더 기량이 좋은가의 문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세계에 통합되기 위한 방식으로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기량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정상규범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전문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가? 장애인 예술이 과연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물을 때 전문성과 테크닉이 장애인 문화예술을 설명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장애인 문화예술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일 수 있는 투쟁의 현장이다.

한국사회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변화를 가지려면 장애인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기반 되어야 한다. 나는 이 발표문에서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의 경험을 들었지만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더 존재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의 개념,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목록을 다시 쓰고 구체적인 예산으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조자료]

## 〈6·13 지방선거 서울시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장애인 문화예술권 발언문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연출)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에서 문화예술운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원 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세상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절 찾는 곳도 제가 갈 곳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여성공감이란 장애여성인권단체 춤추는 허리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는 그저 단순히 연극을 하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장애여성의 삶을 무대를 통해 알리고 장애여성들이 주체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저희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는 공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문제, 활동보조와의 조율, 편의시설이 되어있는 연습공간, 또 극장” 등이 가능한지가 제일 고민이며, 매번 반복되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희는 연습공간이 없어서 그나마 편의시설이 되어있는 대학교를 찾아다녀야 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공원에서 비와 눈을 맞아가며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이 일이 벌써 10년 전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는 현재도 연습공간도 극장도 찾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문제라고 생각이나 하십니까? 10년 후 20년 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운동이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극장도 장애인석이 따로 있고, 문화바우처도 지원해주는데 뭐가 문제라서 말이 많냐” 화를 내면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석을 지정해라, 혹은 문화바우처를 1년에 몇만원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디든 앉을 수 있게, 어디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장애계 뿐만 아니라 빈곤한 예술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누구는 작고 작은 소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고 싶은 곳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차별없이 장애인도 문화예술의 창작자이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예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직업으로써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활동으로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TV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여성공감 춤추는 허리의 배우들은 그리고 다른 수소자의 극단이 공연과 연극을 하는 이유는 딱히 할 것이 없어서도, 해야 할 일이 없어서 무대에서 “장애를 가진 몸을 있는 그대로 들어내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단지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기에 무대에서 또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시해와 동정인 빵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써 장미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발제 1-2

## 장애인 문화예술과 공공부문의 역할

주윤정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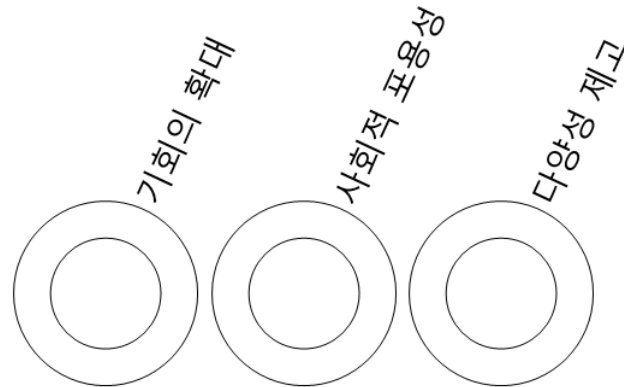


## 장애인 문화예술과 공공부문의 역할

주윤정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 1. 창의성 다양성 지향하는 예술창작 활성화

- 문체부의 장애인 예술정책이 시행되어온지 약 10여년이 되어, 장애인 예술과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원 등 유관 공공기관이 설립되었음. 하지만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나 비전 없이 진행되어와서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개별지원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창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비전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술영역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창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월성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또한 기존의 장애인 예술정책은 이를 다소 시혜적 모델로 기반한 측면이 있기에 장애인 예술 모델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새예술정책에는 장애인 예술을 ‘창의성/다양성’의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등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적인 장애인 예술 모델을 수립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을 하나의 고유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예술에서 드러나는 ‘다름’은 차별이나 배제의 근거가 아니라,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에서 역할하게 되는 핵심적 정체성이며 또한 이는 사회의 ‘다양성’의 핵심적인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기반 마련(장애인 예술 특성화, 공간 확충 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의 기회의 마련과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창의성과 포용성 기반의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 장애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장애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애예술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장애예술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장애예술의 특성이 포용되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화 전략의 지원방식이다.
- 장애인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역량강화 활동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예술가의 경우, 비장애인 예술가들과 달리 개별적 욕구가 있어도 예술적 방법론이나 담론에 대한 학습 및 연구의 기회에 적어 다양한 창작을 시도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부족함. 장애인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담론을 연구하거나 창작실험을 시도하려 하여도, 전문적인 정보나 경험을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부족. 장애인 예술가가 기초적인 예술적 방법론부터 새로운 예술실험, 동시대 문화예술 담론, 타장르간 결합 등 다양한 예술적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게 함. 기존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장애인 예술가와 관련 모임이 새로운 창작언어를 발견하고 장애예술을 특성화하게 하고자 함.

## 2. 접근성/격차해소를 위한 향유 기반 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달체계와 협의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확산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황. 관련 기구 및 조직들간의 협의체가 필요함. 또한 제도적인 정비와 더불어 공공성/책무성 강화하기 위한 사업지표체계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



- 일반 문화예술 정책과의 협력이 부재하여, 특수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일반 문화예술 정책 담당자에게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보편적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번 새정부 예술정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분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하여서는 장애인 예술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문화예술 정책 내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예술의 책무성을 높여가는 한편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또한 장애인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문화기관 등 유관종사자들에게 장애인 예술관련 인식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 예술 영역은 여러 융합적인 접근과 문화예술뿐 아니라, 사회복지/특수교육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협치와 전달체계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장애인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예술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 재정비(별도법의 제정보다는 일반법 안에서 장애인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관련 공공시설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문화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 문화관광부 산하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장애문화예술 인식 교육 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의도치 않은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공공문화예술 기관(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및 문화예술 정책 관련 종사자들에게 장애인 관련 인식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에 대한 예방적 정책을 실시함.  
※ 이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교육하여 파견하도록 함. 현재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가인 고정욱 박사의 경우, 다양한 강연활동을 전국의 학교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사례임.

#### 협치체계·전달체계 정비

- 문화예술의 분야에서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센터,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으

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음.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아카데미 시행 등에 있어서 위의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각각 기관들의 사업 분야에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장애인 관련 정책기관과의 협업을 늘려가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장애인 고용/직업을 개발하는 기관과 문화예술 분야 직업개발 및 교육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있는 유관기관, 박물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과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지역의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 실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거점 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 복지관, 특수학교,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전달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특수학교 졸업이후와 문화예술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졸업 이후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질화해야 함. 특수학교,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재단 등과 연계할 필요.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역 문화재단 차원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또한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장애인 문화정책 연구 조사 자료, 장애인 예술단체(개인) 현황 및 활동정보, 관련분야 통계 제공, 해외 유관기관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및 현장 동향 정보 제공, 국내외 기관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정보 게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등 장애-비장애인 상호작용 관련 지식자료 등재, 장르별 장애-비장애 예술가 창작협업 사례 및 성과 소개,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 업로드 (지도검색 형태) 등을 포함하여, 이를 전국의 장애인 예술인, 매개자, 기획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예술인 뿐만 아니라, 생활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이런 차별적 혐오 표현을 감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다양한 예술 활동, 공동체 예술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 공동체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울리고 상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시급함. 마을예술사업, 공동체 예술사업과 적극적으로 협업모색하여 사례 개발 필요.
-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이 필요함.

### 3. 장애인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장애인 예술 활동자체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가치확산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비장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서는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장애예술인이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인들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예술인들의 자생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 관련 직업개발, 커리어교육,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 기획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인식제고를 위해 장애인 예술 관련 충서를 기획하여 보급해야함. 특히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 한층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 가치 확산이 예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 커리어 개발 사업

- 공공/민간 문화예술 예술 단체 및 기관 등에서 장애인 인턴쉽 활성화  
장애인의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에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인턴쉽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음. 이런 직업 경험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들 문화예술 행정과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음. 특히 청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서, 직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음.

예) 미국 케네디 아트센터의 VSA인턴쉽.

- 장애인 문화예술 커리어 가이드 개발 및 직업개발

우선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는 방법 등의 실용적인 지침,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가능한 직업영역 소개,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험 소개 등을 하는 커리어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직업 영역개발이 필요함. 장애인 예술인이 역할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유관분야의 직업영역이 개발되고, 또한 이렇게 개발된 직업들이 기존의 장애인 고용제도와 결합하여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일자리의 창출이 되도록 해야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컨설팅 프로그램

- 장애인 예술인들 중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음. 또한 많은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채용 지원 기간이 끝난 후의 자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무척 어려운 상황임. 카페를 운영하는 등, 수익창출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본래 목적 사업에 의거한 자활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서비스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장 창출에 대한 지원과 또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기획과 컨설팅 등을 실시함.

- '장애예술' 총서 발간: 장애예술 관련 학술서, 대중서 등을 기획하여 발간하고자 함.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 단행본 사업을 기획하고자함. 우수 도서들을 번역하여 발간하고,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중요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간할 예정임.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발제 2-1

## 접근 가능한 관광의 과제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접근 가능한 관광의 과제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기본적인 의식주의 권리조차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의식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당연히 일하고 꿈을 펼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과 노인 문제는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층의 관광 증가가 예상되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났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제정되면서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문제를 복지와 시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정당한 편의’라는 개념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와 체육 활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되었지만, 관광 활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른 차별금지 분야에 비해 관광 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관광 활동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24의 2 조항이 추가되어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최소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즉각적인 체감은 어렵겠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중 문화 관광 체육 관련 조항〉

분야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li> <li>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li> <li>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li> <li>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li> </ol>
관광(시설)	<p>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9.19.]</p>	<p>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li> <li>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li> </ol> <p>[본조신설 2018.3.27.]</p>
체육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p>	<p>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li> <li>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li> </ol>



분야	법률	시행령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 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에 주로 관련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시설들은 필요한 편의시설과 설비,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관광과 관련된 시설은 (1)공원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 시설/수련시설 (3)숙박시설 (4)관광휴게시설이 있다. 공원에는 국공립공원 등 생태/자연관광지가 해당될 것이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시설로 되어 있다. 수련시설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이 해당된다.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서 일반숙박시설은 객실수 30실 이상이 해당된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계과점 등 음료·차·음식·빵· 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또한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동권이다. 장애인 등의 이동권은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과 관련이 깊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을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동권에서 가장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광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세 법률은 굉장히 유기적이다.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광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관광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해 다루는 교통약자법은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촘촘하게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안전하고 동등하게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다른 말로는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고도 한다. 접근 가능한 관광이란 장애나 연령, 신체조건 등 다양한 이유로 관광활동에 제약받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관점, (1)관광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2)교통수단의 보장 (3)정보접근성 확보 (4)인적서비스 개선에서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 (1) 관광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

관광시설은 크게 관광지/숙박시설/관광음식점으로 나뉘볼 수 있다. 관광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3가지 영역이다. 관광시설의 접근로에서부터 주요 동선, 주요 시설을 자유롭고 동등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지를 방문할 때 우리는 누구나 그 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을 구경하고 감상하고 싶어 한다. 기념사진을 찍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야를 누리고 싶다. 그러나 관광지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가장 접근성에 취약한 휠체어 사용자들은 다른 관람객과 다른 동선을 이용해서 제한된 구간만 관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장애인의 관람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을 동등한 관람객으로, 손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상 객실 30개 이상의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은 장애인용 객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객실이 있다고 해서 믿고

갔다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이 좁은 객실 문, 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좁은 통로, 턱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 등 이름만 장애인용 객실이지 실제로는 설치기준을 준수한 곳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이용하기 편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한 장애인용 객실은 고급 호텔의 비싼 객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으로 일부 단계적으로나마 적용을 받게 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에어비엔비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관광활동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만족스러운 이용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활동의 제약은 이용 가능한 음식점이 없다는 것도 한몫을 한다. 물리적 접근성은 주로 휠체어 사용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관광지 인근의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턱이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없거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 없다. 한여름에도 휠체어 사용자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음료수 한 잔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 음식점들은 실내가 온돌이나 마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용할 수 없는 곳들도 많다. 최소한 관광음식점이라면 다양한 손님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나 관광공사 등이 인증마크나 맛집 등으로 추천할 때는 메뉴나 맛, 서비스 외에 반드시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했으면 한다.



## (2) 교통수단의 확보

관광지까지의 교통수단은 관광지나 숙박시설 등 개별 시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관광 분야의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나 숙박시설, 음식점의 환경개선뿐 아니라 이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에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관광 담당 부서와 교통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지문을 해도 선별적으로 반영되고 부서간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제주도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원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가지고 외부에서 온 여행자와 현지인이 대립하거나 우선순위를 둘 문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문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이나 관광객용 저상시티투어버스, 저상셔틀버스 도입 등으로 풀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이나 횟수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관광지 내에 셔틀버스나 관광열차 등 이동수단이 있다면 휠체어 사용자 등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원시는 화성어차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제가 아니라는 점, 열차 모두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 리프트 설치 차량의 운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열차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와 별도로 장애인 관광정보는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도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거나 지역이나 코스로 찾아볼 수 없어 불편하다. 무엇보다 ‘장애인 따로’ 제공되는 ‘빈약한 정보’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광지의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 관광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관광 정보 접근이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에서만 그나마 제공이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관광지에서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잘 되어 있으면 빠짐없이 알차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차 개선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면 될 것이다. 열린관광지의 홈페이지를 참고로 모든 관광시설에서 접근성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정보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120여개 관광지를 실태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또는 통역센터 연계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각 지역에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하여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곳도 없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관광지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대응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알고 있는 곳도 없었다.

서울시는 서울도보해설관광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덕수궁)과 청각장애인(덕수궁, 정동경희궁) 대상 맞춤형해설관광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두 코스뿐이지만 전국의 관광지마다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4) 인적서비스 개선

물리적인 환경은 100% 완벽하게 개선될 수 없다. 문화재나 생태관광지 같은 곳들은 특히 더욱 그렇다. 그럴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인적서비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닿지 못하는 부분은 인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간 관광종사자 교육에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제안이 있어 왔지만 실제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광안내소 직원이나 여행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 관광호텔 관리자, 종사자 등 다양한 기관의 교육 과정 속에 장애인 관광에 대한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포함된다면 인적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중에는 장애인 대응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훈련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권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고객으로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의 질이 달라진다. 또한 안전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관광시설의 종류에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경우 자격 또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는 이러한 자격 또는 인증서를 가진 종사자가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관광활동의 자발적인 주체로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와 시혜의 관점으로 장애인 관광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실버(노인) 세대는 의심 없이 관광 산업의 큰 축이 될 것이며, 접근 가능한 관광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분야가 될 것이다. 장애인을 관광활동의 소비자이자 고객으로 설정하고, 관광업계는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사회는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발제 2-2

## 관광에서의 장애인차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관광에서의 장애인차별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1. 들어가는 이야기

올해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그 시행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의 시행이 10년, 20년 긴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던 2007년 당시 장애인의 차별은 일상이었다. 당장 일상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교육, 고용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차별 문제,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던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법 안에 담아내기 어려웠다.

결국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안에 여행이나 관광과 같은 내용은 담기지 못하였다.

10년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변화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어갔다. 특히 삶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상을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활동 또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장애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관광이나 여행을 즐기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제 경험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7년인 작년에서야 겨우 개정을 통해 관광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재화 용역부분에 넣게 되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 관광호텔 등에서만 겨우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한 법규정은 장애인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2.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 1) 관광활동(여행) 현황 및 실태

국어사전에서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풍습 등을 구경하며 유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즐거움을 위한 여행’, ‘사람의 기분을 진화시키고, 휴식을 취하며, 또한 인간 활동의 새로운 여러 국면이나 미지의 자연경관에 접촉함으로써 그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한다든가, 거주기를 떠나 체재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한 유형’(1966년 메드상)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활동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활동으로 누구나 즐기고 경험하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되고 있다.

전국 2,467가구의 만 15세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여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89.5%로 약 10%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은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년동안 1인당 5.5회 이상 여행을 떠나고, 평균 열흘 정도의 날짜를 여행으로 보내고 있다.

일년에 한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국내여행 해외여행으로 나누어 국민의 여행 횟수, 일수, 시기, 목적 등의 조사결과와 함께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내용까지 담고 있다. 하지만 2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보고서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담겨있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확립해야하는 정부부처에서조차 장애인은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하는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서의 배제는 장애인 통계에서 비장애인의 여행경험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행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겨우 9.8%만이 여행경험이 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러한 통계는 현재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장애인여행 실태 (2015 장애인통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	9.8	11.9	2.5	9.5	10.5	8.1	6.1	24.9
해외여행 (지난1년동안)	3.9	5.3	1.1	3.5	2.4	3.3	2.8	3.6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	2.0	13.1	18.7	2.1	16.1	28.5	12.3	5.4
해외여행 (지난1년동안)	0.7	5.5	12.1	0.0	3.5	0.0	6.7	0.0

이와같이 장애인의 여행 경험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여행을 떠나도 머물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숙박시설의 의무사항은 아주 최저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객실의 수는 전체 객실 수 중에 2%,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만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의 기준 또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중 30개 이하의 시설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2016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휴가기간인 8월에서 9월까지 표본으로 일부 숙박업소의 장애인객실 비율을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 2%를 초과하여 장애인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30%의 숙박시설이 2%이하이거나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2%라는 수치는 100개의 숙소에서 겨우 2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아니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객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

### ① 관광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리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활동이 어느 한가지 권리의 보장만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은 다양한 기본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관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한 많은 부분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권

이 보장되어야하며,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유형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관광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동권을 보장해야하지만, 현재는 열차를 제외하고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로는 휠체어장애인이 전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쉽게 떠날 수 없다. 특히 시설물 접근의 경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업소나 관광지를 찾기 어려워서 가고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 결국 선택권이 전혀없는 관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 ② 관광활동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

관광에 필수요소인 교통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불가 외에 흔히 관광지에서 대여해서 사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핸드컨트롤 등 장애인보장구가 설치된 차량이 없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역시 렌트가 업체에서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타지역에서 여행을 온 사람은 사전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일부지역의 경우 예약으로만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 저상버스의 수는 총 9대에 불과하다.

관광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물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관광지 주변 카페, 식당 등은 장애인편의법 상 편의시설 의무가 주어지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30개 이하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펜션, 모텔(여관), 게스트하우스 등은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용객실 보유의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외에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에게 맹인안내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영장 등에서 휠체어 바퀴 때문에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관광과 관련한 차별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차별사례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내려 시정조치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 사례〉

1. 렌트카 대여업체가 핸드컨트롤 등 장애인용보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차량대여 거부
2.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항공기 안전탑승을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구비 운영 권고)
3.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장에 대한 매뉴얼 등 마련)
4. 선박 이용에 있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5.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전동휠체어 분리 및 재장착 직원교육 권고)
6.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 권리로서의 장애인관광(여행)

장애인의 관광(여행)활동은 몇 가지 법제도적 규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여가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006년 12월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008년 5월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별히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등 의식주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여행과 관련한 내용들 또한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문화정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지 접근 보장, 서비스 접근 보장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여행활동 중 접근권의 보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국회를 통해 비준되어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결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여행에 대한 접근권 규정은 단순히 선언이 아닌 지켜져야 하는 법이며, 이에 대한 차별행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 ③ 관광진흥법

####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국민의 관광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따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책임을 주고 있다. 또한 장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관광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4) 장애인차별금지법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9.1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와 그 사회속의 구성원의 생활상과 그에 따른 욕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광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이다. 10여년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도 관광이나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관광활동에서의 이동권, 접근권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만을 재화.용역의 내용안에 담고 있던 것을 관광활동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작년 9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담아내게 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미비한 범조항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하지 않던 상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책 강구 등을 명시하였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재화용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전반적인 서비스제공에서의 차별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한 사항들에도 모두 적용가능한 내용이었다. 다만, 그내용을 좀더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에 의무를 강조해서 담아내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으며, 또한 적용에 단계적 범위를 두어서 전면 적용되는 것은 2030년으로 미루어두고 있어서,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 3. 맺는 이야기-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관광(여행)

####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 필요

##### ① 관광진흥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관광을 단순히 지원과 시책의 강구로 규정하고 있는 선언적인 내용 이외에 장애

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나 관광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현재 의무규정이 미비한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숙소 비율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지 자체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활동에서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 ③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기본적인 교통수단을 실제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관광활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2) 장애인만을 위한 관광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

2005년 유엔세계관광기구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고 관광시설 및 목적지에 주차장, 표지판, 엘리베이터,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과 장애인시설 이용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가격의 책정까지 장애인만이 아닌 누구나 가능한 관광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역, 관련시설, 숙박시설, 식당, 박물관 등 관광관련시설들이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가능한 관광시설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 3)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는 관광(여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 차별받는 상황에 있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위해 나서는 걸음이라면 더욱 차별없이 누구나 그 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에서의 차별금지란 즐거움을 찾기위한 여정이기에 모두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길 수 있어

야한다. 앞에서 언급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시설접근권은 꼭 장애인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은 자연권이다.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권리가 관광활동 과정에서 침해받지 않도록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행복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광환경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장애인이 가고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갈수 있는 곳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변화하기를 희망해본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모두 함께 떠납시다!!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발제 2-3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 1. 장애인의 관광 현황

관광이란 통상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을 즐기면서 휴양을 취하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2년에 발간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의하면,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여가·관광경향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40.7%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서 '여행'이라고 답해 여행(관광)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순위 기준, 장애인·비장애인 비교)〉

(단위 : %)

2011년	계	여행	문화예술 관람	체육 활동	창작 취미	자기 개발	종교 활동	휴식	사교 관련	기타*
전체	100.0	43.4	9.5	8.1	4.5	7.1	4.1	4.4	4.8	14.0
장애 여부	장애인	40.7	5.5	3.5	3.5	3.8	6.4	7.5	6.3	22.8
	비장애인	100.0	43.5	9.7	8.4	4.6	7.3	4.0	4.8	13.5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2012. 7.)

\* 기타에는 TV시청, 스포츠 관람, 컴퓨터 게임, 봉사활동 등 포함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대다수의 장애인이 TV시청(96.0%)을 문화 및 여가생활로 하고 있었으며, 여행 등 관광활동(9.8%), 영화감상(7.1%)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낮은 소득수준, 건강상 문제, 혼자서 외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이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 2. 장애인의 관광 관련 법령 현황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과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노회찬 의원이 2017. 1. 12.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2017. 2. 9. 결정하였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조항과,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 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 시 개정안의 ▲ 관광활동 대상지역 ▲ 차별금지의 영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자 범위 등에서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관광활동의 대상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의 관광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관광단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간접차별·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방해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행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장애인 관광 접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자에 관광사업자를 추가하고 의무대상시설에 관광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이 개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반영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대상자에 국가 및 지자체외에 관광사업자가 포함되었으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있어서도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방해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차별행위 유형이 모두 포함되었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도 개정안은 관광지 방문만을 규정하였으나 인권위의 의견이 반영되어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도 관광활동에 관한 정의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 결과 2018. 3. 20.자로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시행 2018. 3. 20.]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장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권위는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2018. 2. 22.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 3항 관련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p>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추가 편의 제공 서비스 등은 <u>문화체육관광부</u></p>	<p>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장애인이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p>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p> <p>③ ----- ----- -----<u>보건복지부</u></p>	<p>○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정보접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개정안에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p> <p>○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광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및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명소에 대한 접근을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장애인이 관광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 측면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이 실효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물리적 접근성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p> <p>○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유형별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p>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p>가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u>문화체육관광부</u>는 <u>보건복지부</u>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p>	<p>----- -----<del>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del>----- -----.</p>	<p>사항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편의제공 기준 등을 고시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 제고보다는 관광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편의 제공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p>

○ 시행령 개정안 [별표 4의 2] 관련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p>1. 202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p> <p>2.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사업자 가. ~ 라. (생략)</p> <p>3.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사업자 가. (생략)</p>	<p>1. (현행과 같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p> <p>2. 2023년 ----- 가. ~ 라. (현행과 같음)</p> <p>3. 2025년 ----- 가. (현행과 같음)</p>	<p>○ 개정안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시행(2018. 3. 20.) 2년 후인 2020. 3. 20.부터 2030. 3. 20.까지 최장 1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p> <p>○ 그러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최소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단계적 범위의 적용 유예기간(법 최초 시행 후 7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 관광사업체별로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시기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시행(2018. 3. 20.) 5~7년 후인 2023. 3. 20. 및 2025. 3. 20.부터로 각각 앞당길 필요가 있음.</p> <p>○ 또한, 민간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도 국가 및 지자체와 동일하게 2020. 3. 20.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018. 3. 27. 「장애인차별금지 시행령」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시행 2018. 3. 27.]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별표 4의2]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 3.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의 관광활동 차별금지가 새롭게 규정, 시행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편의제공 유예기간이 2025년 및 2030년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편의제공이 현실화되기까지에는 매우 오랜 세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서도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어 인권 위는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이개정될 수 있도록 정책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1**

**관광지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1)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태종대, 해운대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경 기	14	대성, 산장, 수동, 장흥, 용문산, 신록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소요산, 궁평
강 원	41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간현, 옥계, 주문진, 연곡, 동명, 대관령 어흘리, 무릉계곡, 망상, 주암, 구문소,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팔봉산, 홍천온천, 어담산, 유현문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미탄마하생태, 화암, 아우라지, 고석정, 직탕, 광덕계곡, 후곡약수, 내설악 용대, 방동 약수, 오토테마파크, 송지호, 삼포문암, 화진포, 오색, 지경
충 북	22	세계무술공원, 충은온천, 능암온천, 충주호체험,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체천온천, 만남의광장, KBS촬영장, 속리산레저, 구병산, 장계, 송호, 레인보우 힐링, 수옥정, 괴강, 무극, 천동, 다리안, 온달
충 남	25	천안종합휴향, 태조산, 곰나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간월도, 삼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구드레, 서동요역사, 금강하굿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남당, 예당, 덕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옹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온천, 운일암반일암
전 남	28(1)	대구면도요지, 곡성도립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울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쌀문화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래, 문경온천, 문경상리, 오전약수, 다덕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바위, 문수, 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포리, 예천삼강, 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탐산온천,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 남	21(1)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송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실안, 급서, 전통한방휴양, 중산,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목계, 농월정, 미송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5	제주남원, 돈내코, 수망, 미천굴, 토산, 표선, 광지, 제주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돌문화공원, 묘산봉, 봉개휴양림, 용머리, 함덕 해안, 협재 해안
합 계	226(3)	※ 진한글씨는 조성계획 미수립 관광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2**

**관광단지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연번	단지명	위 치	규 모 km <sup>2</sup>	개발주체
1	오시리아 (舊동부산)	부산시기장군기장읍대변리,시랑리일원	3.663	부산도시공사
2	강화종합리조트	인천강화군길상면선두리산281-1번지일원	0.645	(주)해강개발
3	어등산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219번지 일원	2.73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4	강 동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일원	1.369	울산 북구청
5	평택호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2.743	(주)평택호관광단지 (가칭)
6	안성 죽산	경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	1.438	(주)송백개발 (주)서해종합건설
7	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4.855	강원도개발공사
8	고성 텔피노 골프앤리조트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월암리 403-1번지 일원	0.901	(주)대명레저산업
9	설악한화리조트	강원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1.314	(주)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10	원주 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판대리 일원	11.356	(주)한솔개발
11	신영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원	1.697	(주)신영종합개발
12	라비에벨 (舊무릉도원)	강원춘천시동산면조양리산156번지및홍천군북방면 전치곡리산1번지일원	4.844	(주)코오롱글로벌
13	한원춘천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195번지 일원	0.746	(주)한원개발
14	평창 용평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219	(주)용평리조트
15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운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33	(주)보광
16	홍천 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일원	7.052	(주)대명레저산업
17	웰리힐리파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31	(주)신안종합리조트
18	원주 더네이처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1번지 일원	1.444	(주)경안개발
19	양양국제공항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448	(주)새서울레저
20	횡성 드림마운틴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61-1번지 일원	1.797	(주)미지엔리조트
21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강원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777번지 일원	1.874	(주)원주화훼특화관광 단지개발
22	원주 루첸	강원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 239-1번지 일원	2.644	(주)지프러스

연번	단지명	위 치	규 모 km <sup>2</sup>	개발주체
23	골드힐카운티 리조트	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기토리일원	1.698	(주)골드힐
24	백제문화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오수리 일원	3.026	(주)호텔롯데
25	증평 에듀팜 특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2.623	(주)블랙스톤 리조트
26	해남 오시아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73	한국관광공사
27	여수 경도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일원	2.169	전남개발공사
28	여수 화양	전남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안포리, 화동리, 이목리, 서촌리 일원	9.990	(주)일상해양산업
29	고흥우주해양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1.158	고흥군
30	진도 대명리조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0.559	(주)대명레저산업
31	보 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동, 북군동, 천군동, 손곡동 일원	8.515	경북관광공사
32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	4.019	경북관광공사
33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5	경북관광공사
34	김천온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안간·과천리 일원	1.424	(주)우촌개발
35	마우나오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번지 일원	6.419	(주)엠오디
36	창원 구산해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리, 심리 일원	2.842	창원시
37	웅동관광단지	골프장, 오토캠핑장, 수변문화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숙박시설 등	2.101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38	중 문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원	3.562	한국관광공사
39	신화역사공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 일원	3.98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0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1.53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1	팜파스종합휴양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	3.001	(주)남영산업
42	성산포해양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일원	0.654	(주)보광제주
43	예래휴양형주거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0.741	(주)버자야제주리조트
44	록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0.523	(주)록인제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 3**

**관광사업체 현황** [기준일 : 2017. 12. 31.]

구 분		합계
대분류	소분류	
여행업	국외여행업	9,161
	국내여행업	6,825
	일반여행업	4,757
	소계	20,743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1,017
	수상관광호텔업	0
	한국전통호텔업	8
	가족호텔업	144
	휴양콘도미니엄업	223
	호스텔업	498
	소형호텔업(14년 신설)	25
	소계	1,915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87
	종합휴양업	29
	자동차야영장업	376
	관광유람선업	39
	관광공연장업	5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15년 삭제)	0
	일반야영장업(15년 신설)	1,568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16년 분류 변경)	1,651
	소계	3,755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13
	국제회의기획업	844
	소계	857
카지노업	카지노업	17
	소계	17

구 분		합계
대분류	소분류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	1,951
	소계	1,951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12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384
	관광식당업	1,537
	관광순환버스업(시내순환관광업)(16년 명칭변경)	53
	관광사진업	15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
	관광토속주판매업	0
	관광펜션업	522
	관광극장유희업	165
	관광퀘도(삭도)업	12
	한옥체험업	1,252
	관광면세업(16년 신설)	33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12년 신설, 16년 분류변경)	0
	기타관광편의시설업(제주)	2
소계	3,989	
총 계		33,227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tour.go.kr>)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부록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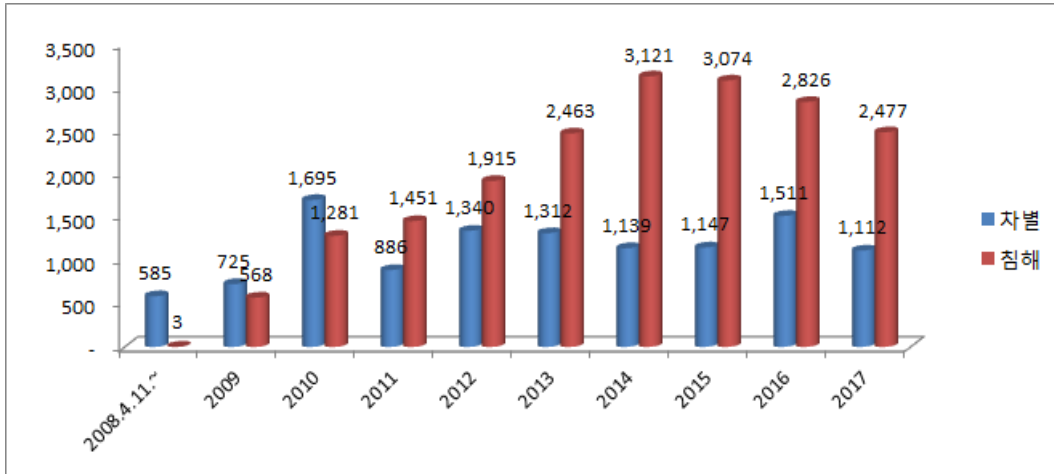


## 부록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I.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30,631	11,452	19,179	
2008.4.11.~	588	585	3	
2009	1,293	725	568	
2010	2,976	1,695	1,281	
2011	2,337	886	1,451	
2012	3,255	1,340	1,915	
2013	3,775	1,312	2,463	
2014	4,260	1,139	3,121	
2015	4,221	1,147	3,074	
2016	4,337	1,511	2,826	
2017	3,589	1,112	2,477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 II.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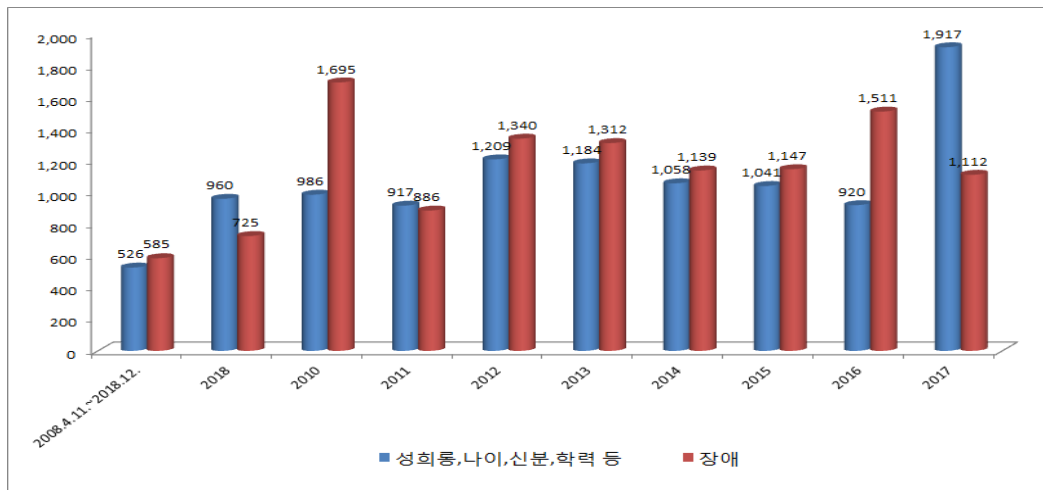
###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7. 12.	진정건수	26,439	14,334	12,105
		비율(%)	100.0	54.2	45.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7. 12.	진정건수	22,170	10,718	11,452
		비율(%)	100.0	48.3	51.7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8	1,041	1,147	
	비율(%)	100.0	47.6	52.4	
2016. 1.~ 2016. 12.	진정건수	2,431	920	1,511	
	비율(%)	100.0	37.8	62.2	
2017. 1.~ 2017. 12.	진정건수	3,029	1,917	1,112	
	비율(%)	100.0	63.3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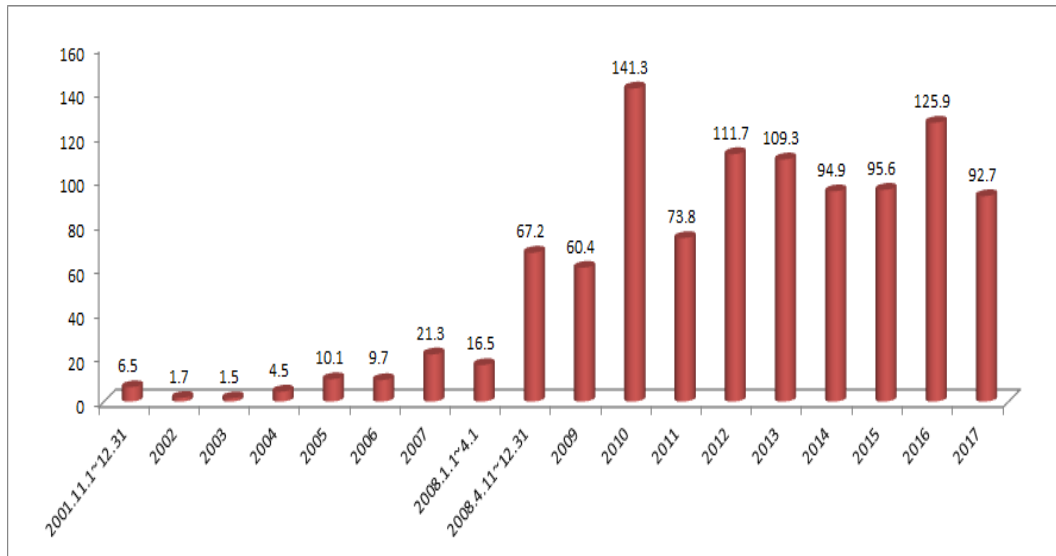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애법 이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 진정 건수	12,105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1, 452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112
월 평균	62.4	8.4	6.5	1.7	1.5	4.5	10.1	9.7	21.3	16.5	98.1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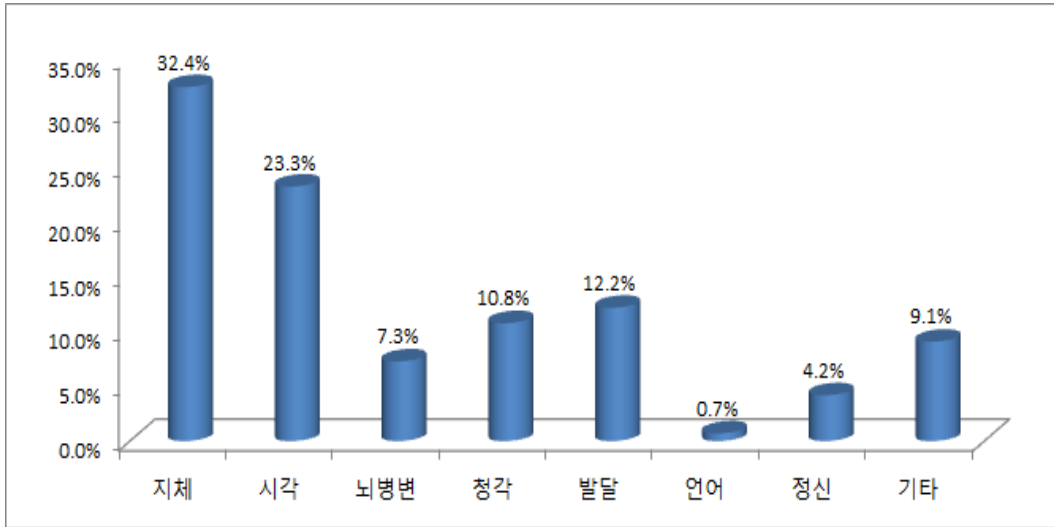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비율	100.0	32.4	23.3	7.3	10.8	12.2	0.7	4.2	9.1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5.0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4	8.1	24.1	0.9	5.4	5.4
2012	건수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2	1.0	3.5	10.1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8	0.5	3.8	10.6
2014	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5	8.1	9.8	9.1	1.1	4.8	6.2
2015	건수	1,147	334	440	93	101	101	5	30	43
	비율	100.0	29.1	38.4	8.1	8.8	8.8	0.4	2.6	3.8
2016	건수	1,511	628	329	101	93	247	7	62	44
	비율	100.0	41.6	21.8	6.7	6.2	16.4	0.5	4.1	2.9
2017	건수	1,112	313	370	97	98	102	12	52	68
	비율	100.0	28.2	33.3	8.7	8.8	9.2	1.1	4.7	6.1
등록 장애인 구성비 <sup>1)</sup>	인원(명)	2,511,051	1,267,174	252,794	250,456	271,843	218,136	19,409	100,069	131,170
	비율	100.0	50.5	10.1	10.0	10.8	8.7	0.8	4.0	5.2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6. 12. 기준(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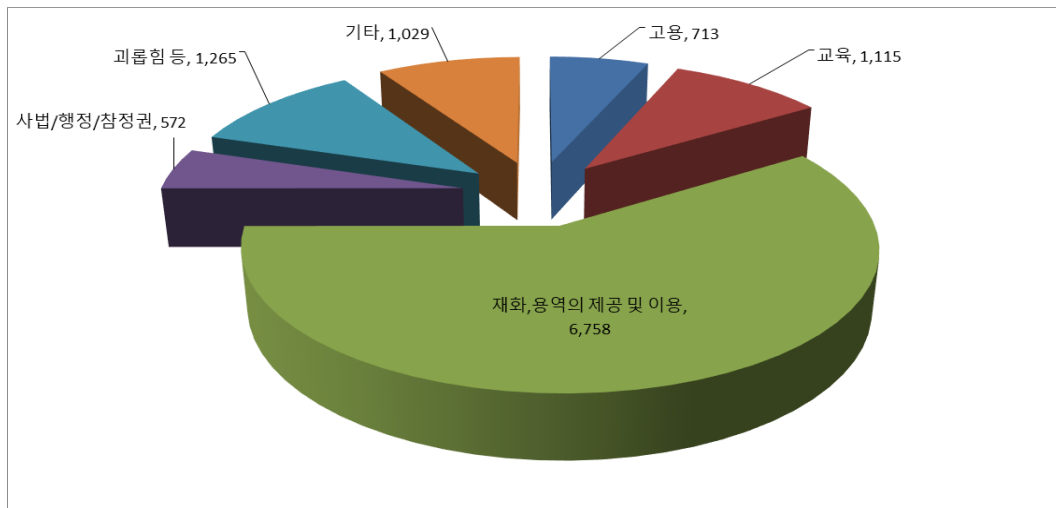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11,452	713	1,115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572	1,265	1,029
	비율	100.0	6.2	9.7	59.0	15.5	6.3	12.2	7.1	15.1	2.8	5.0	11.1	9.0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6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7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0	8.3	5.8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7	69	55	733	129	82	125	99	286	12	38	121	131
	비율	100.0	6.0	4.8	63.9	11.2	7.2	10.9	8.6	24.9	1.1	3.3	10.6	11.4
2016	접수	1,511	56	536	643	251	48	117	58	161	8	62	88	126
	비율	100.0	3.7	35.5	42.6	16.6	3.2	7.7	3.8	10.7	0.5	4.1	5.8	8.3
2017	접수	1,112	81	90	676	213	46	135	107	168	7	31	91	143
	비율	100.0	7.3	8.1	60.8	19.1	4.1	12.1	9.6	15.1	0.6	2.8	8.2	12.9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1.11.25. ~ 2008.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2015. 1. 1. ~ 2015.12.31.	2016. 1. 1. ~ 2016.12.31.	2017. 1. 1. ~ 2017.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년 (2008. 4. ~ 2017.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112	11,452
	월평균	8.4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92.7	98.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81	713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6.1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90	1,115
	월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7.5	9.6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3	676	6,758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6	56.3	57.9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8	62	31	572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2	5.2	2.6	4.9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4	234	2,294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8	19.5	19.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자폐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고용	713	260	73	58	111	55	15	42	99	
교육	1,115	439	85	58	92	353	6	14	68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이용	재화·용역 일반	1,780	578	398	207	140	251	13	65	128
	보험·금융	721	157	144	72	131	106	8	57	46
	시설물 접근	1,400	960	196	113	16	16	2	5	92
	이동 및 교통수단	808	399	172	70	26	40	5	2	94
	정보접근·의사소통	1,729	39	1,188	17	343	27	6	2	107
	문화·예술·체육	320	66	27	17	62	119	-	7	22
사법·행정	405	79	86	21	46	76	5	49	43	
참정권	167	59	32	7	3	8	-	3	55	
괴롭힘 등	1,265	331	74	120	214	254	13	151	108	
기타	1,029	347	191	78	51	89	12	79	182	

###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 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 가. 고용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 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 계	합계	713	262	96	72	16	31	159	7	70
	비율	100.0	36.8	13.5	10.1	2.2	4.4	22.3	1.0	9.8
	공공	240	128	10	34	12	9	20	4	23
	민간	473	134	86	38	4	22	139	3	47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5	23.2	1.5	1.5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구 분	고용 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4	1.5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0	3
	비율	100.0	48.2	8.9	8.9	3.6	3.6	21.4	0	5.4
	공공	24	16	0	2	1	1	2	0	2
	민간	32	11	5	3	1	1	10	0	1
2017	합계	81	17	13	13	1	5	18	4	10
	비율	100.0	21.0	16.1	16.1	1.2	6.2	22.2	4.9	12.3
	공공	29	11	3	5	1	3	2	2	2
	민간	52	6	10	8	0	2	16	2	8

### 나. 교육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 계	합계	1,115	91	61	205	134	88	42	494
	비율	100.0	8.2	5.5	18.4	12.0	7.9	3.8	44.3
	공공	937	50	35	156	121	85	31	459
	민간	178	41	26	49	13	3	11	35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비율	100.0	0.8	1.1	15.1	16.4	0.2	0.8	65.7
	공공	526	3	5	80	87	1	0	350
	민간	10	1	1	1	1	0	4	2
2017	합계	90	19	3	32	7	2	6	21
	비율	100.0	21.1	3.3	35.6	7.8	2.2	6.7	23.3
	공공	77	18	2	30	6	2	5	14
	민간	13	1	1	2	1	0	1	7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572
	비율	100.0	26.3	10.7	20.7	12.0	25.6	4.7	100.0
	공공	2,674	733	67	596	474	558	206	540
	민간	4,084	1007	654	804	334	1171	114	32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5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2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33	129	82	125	99	286	12	38
	비율	100.0	17.6	11.2	17.1	13.5	39.0	1.6	100.0
	공공	188	38	8	38	35	65	4	36
	민간	545	91	74	87	64	221	8	2
2016	합계	643	251	48	117	58	161	8	62
	비율	100.0	39.0	7.5	18.3	9.0	25.0	1.2	100.0
	공공	208	87	9	45	39	27	1	60
	민간	435	164	39	72	19	134	7	2
2017	합계	676	213	46	135	107	168	7	31
	비율	100.0	31.5	6.8	20.0	15.8	24.9	1.0	100.0
	공공	258	80	4	43	78	50	3	29
	민간	418	133	42	92	29	118	4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265	26	32	28	209	144	728	98
	비율	100.0	2.1	2.5	2.2	16.5	11.4	57.6	7.7
	공공	182	7	3	4	35	5	108	20
	민간	1083	19	29	24	174	139	620	78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1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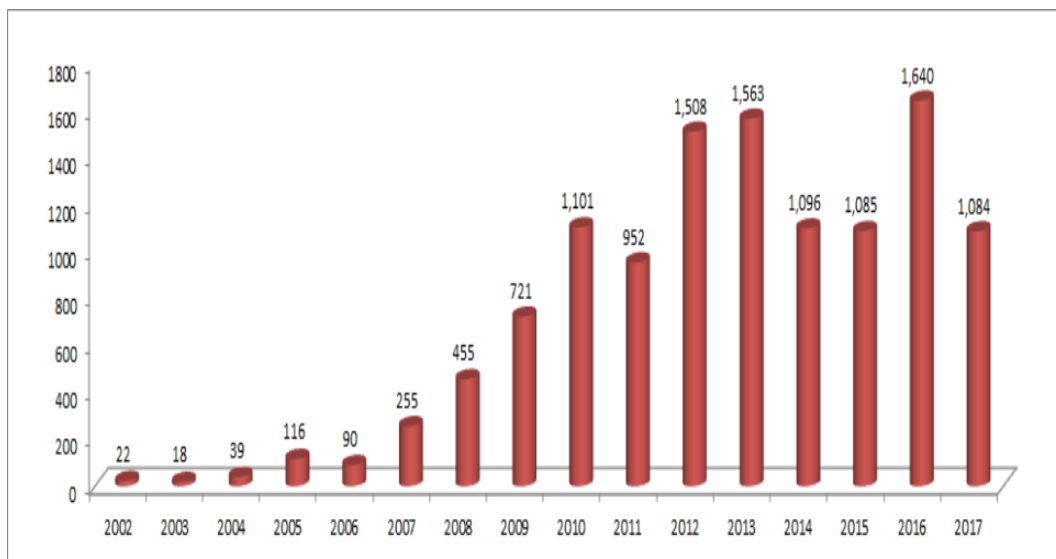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8	1	0	3	20	3	50	11
	비율	100.0	1.1	0	3.4	22.7	3.4	56.8	12.5
	공공	19	0	0	0	5	0	10	4
	민간	69	1	0	3	15	3	40	7
2017	합계	91	4	2	1	17	12	50	5
	비율	100.0	4.4	2.2	1.1	18.7	13.2	55.0	5.5
	공공	19	1	1	0	6	0	10	1
	민간	72	3	1	1	11	12	40	4

#### IV.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745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0	1,084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1,163	5,059	2,429	452	5	376	1,596	2,630	6,039 (4,514)	16	49
구성비 (%)	100.0	100.0	100.0	18.6	0.2	15.5	65.7				
			48.0					52.0			
			45.3							54.1	0.2
2008년	413	191	104	22	-	12	70	87	221 (139)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22.2	-	11.5				
			54.5					45.5			
										46.2	53.5
2009년	721	358	165	10	-	47	108	193	353 (238)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6.1		28.5	65.5				
			46.1					53.9			
			49.7							49.0	0.6
2010년	1,101	417	242	28	1	56	157	17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1.6	0.4	23.1	64.9				
			58.0					42.0			
			37.9							60.2	0.5
2011년	952	566	307	124	-	32	151	259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40.4	-	10.4	49.2				
			54.2					45.8			
			59.5							40.0	0.1
2012년	1,508	890	376	116	-	20	240	514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30.9	-	5.3	63.8				
			42.2					57.8			
			59.0							4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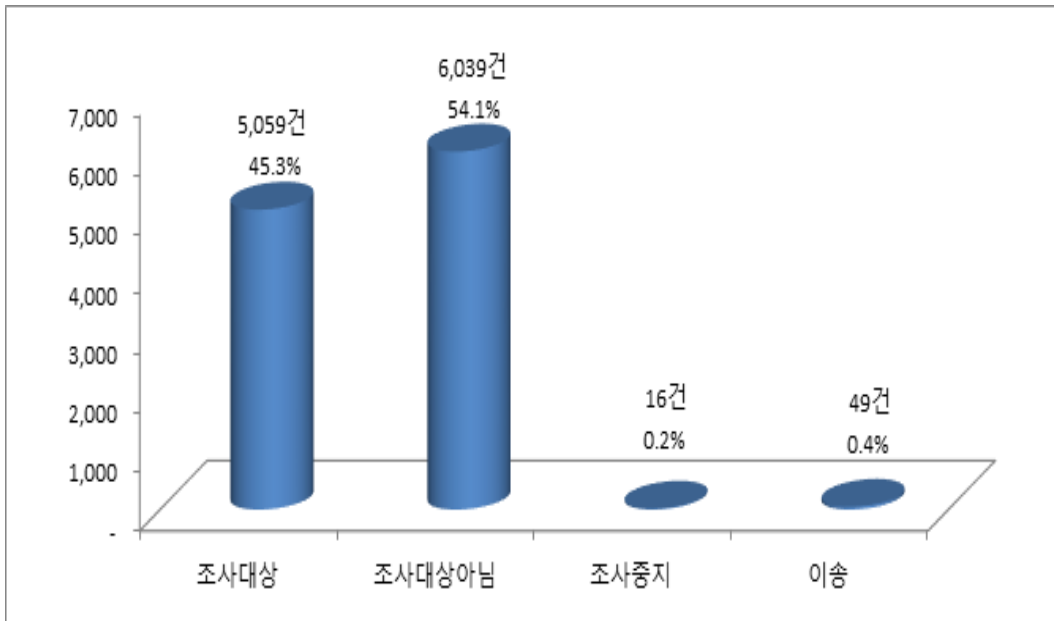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3년	1,563	807	436	29	-	79	328	371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6.7	-	18.1	75.2				
			54.0					46.0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200	17	1	61	121	328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8.5	0.5	30.5	60.5				
			37.9					62.1			
		48.2						51.1	0.3	0.5	
2015년	1,085	416	164	17	-	19	128	252	663 (561)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10.4	-	11.6	78.0				
			39.4					60.0			
		38.3						61.1	-	0.6	
2016년	1,640	434	209	19	3	29	158	225	1,199 (1,048)	-	7
구성비 (%)	100.0	100.0	100.0	9.1	1.4	13.9	75.6				
			48.2					51.8			
		26.5						73.1	-	0.4	
2017년	1,084	452	226	70	-	21	135	226	628 (525)	-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1.0	-	9.3	59.7				
			50.0					50.0			
		41.7						57.9	-	0.4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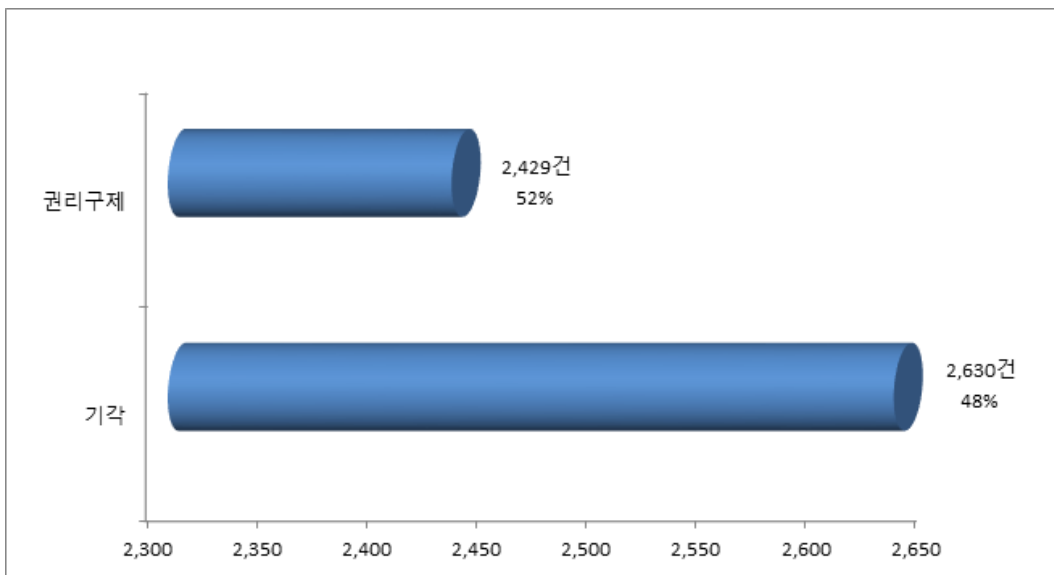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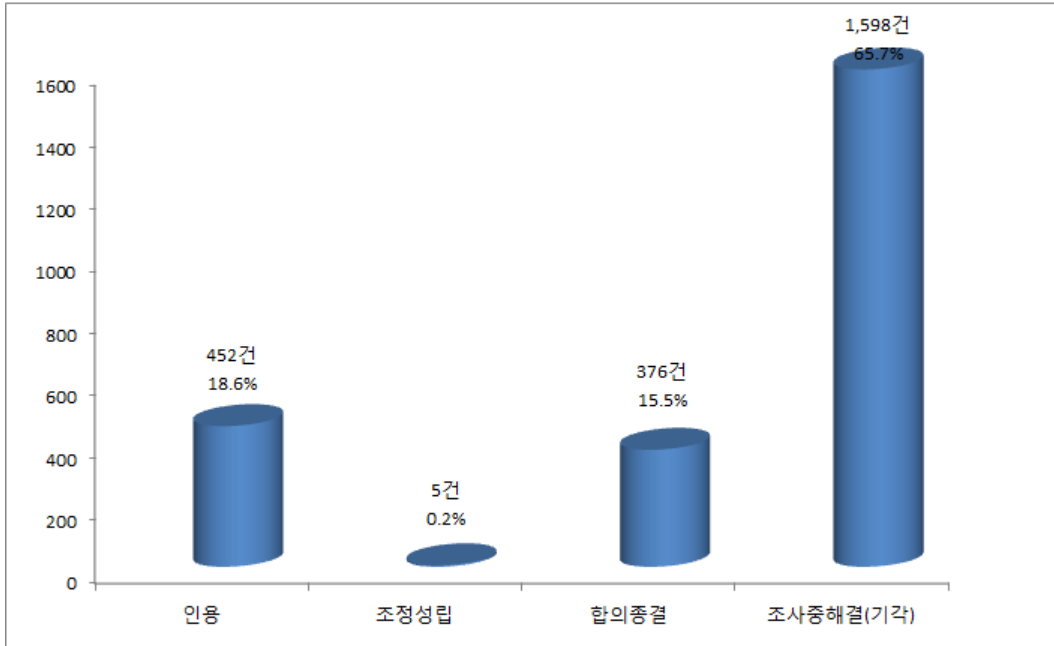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합계	건수	11,163	5,059	452	5	376	1,596	2,630	6,039 (4,514)	16	49
	비율(%)	100.0	100.0	48.0				52.0			
				45.3				54.1	0.2	0.4	
고용	건수	828	287	22	-	51	30	184	533 (426)	3	5
	비율(%)	100.0	100.0	28.9				64.1			
				34.7				64.3	0.4	0.6	
교육	건수	3,464	235	19	-	32	99	85	3,228 (2,451)	-	1
	비율(%)	100.0	100.0	63.8				36.2			
				6.8				93.1	-	0.1	
재화·용역	건수	4,288	3,794	339	4	210	1,346	1,895	476 (433)	9	9
	비율(%)	100.0	100.0	50.1				49.9			
				88.5				11.1	0.2	0.2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건수	2,583	743	72	1	83	121	466	1,802 (1,204)	4	34
	비율(%)	100.0	100.0	37.3				62.7			
				28.8				69.7	0.2	1.3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괴롭힘 등
권고 사건 수	452	22	19	33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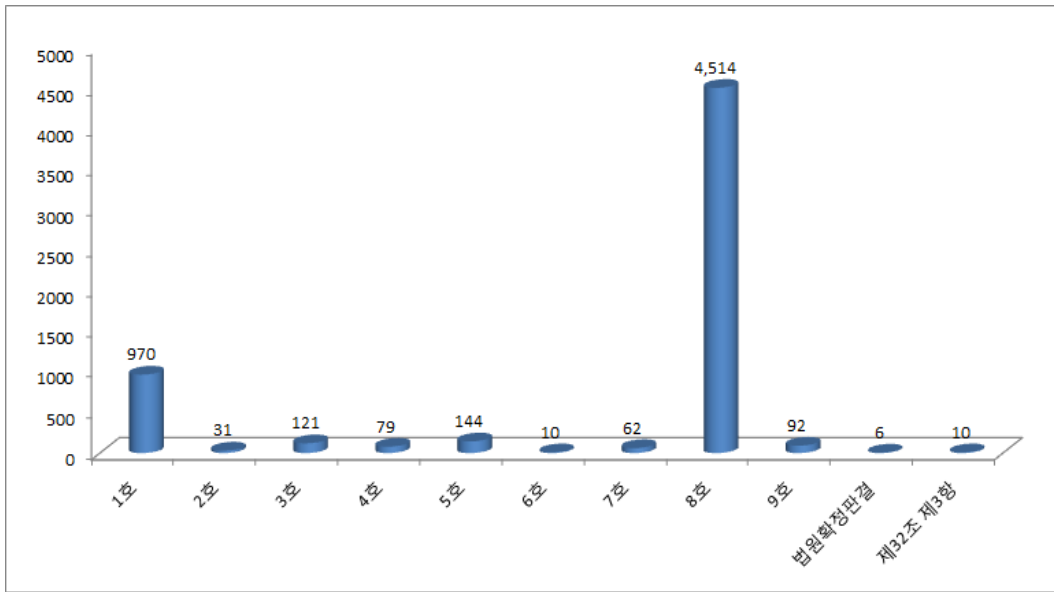
## V.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17.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정판결/헌법재판소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합계	6,039	970	31	121	79	144	10	62	4,514	92	6	10
구성비(%)	100.0	16.1	0.5	2.0	1.3	2.4	0.2	1.0	74.7	1.5	0.1	0.2
2008년	221	54	1	6	11	2	1	2	139	5	-	-
구성비(%)	100.0	24.4	0.5	2.7	4.9	0.9	0.5	0.9	62.9	2.3	-	-
2009년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구성비(%)	100.0	15.9	-	2.5	1.4	3.9	0.3	2.8	67.5	5.4	0.3	-
2010년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	0.9	55.7	1.9	0.2	-
2011년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
2012년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구성비(%)	100.0	10.0	0.4	2.3	1.5	2.6	0.6	1.5	80.4	0.5	-	0.2
2013년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	0.8	60.8	1.2	0.1	0.1
2014년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구성비(%)	100.0	9.3	0.5	1.4	1.9	3.0	0.2	0.4	80.8	1.8	-	0.7
2015년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구성비(%)	100.0	7.4	0.2	1.2	1.1	2.1	0.2	1.8	84.6	1.2	-	0.3
2016년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2	-	0.3	87.5	0.3	-	0.1
2017년	628	60	1	11	7	12	1	5	525	5	-	1
구성비(%)	100.0	9.6	0.2	1.8	1.1	1.9	0.2	0.8	83.6	0.8	-	0.2

-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1,224건
-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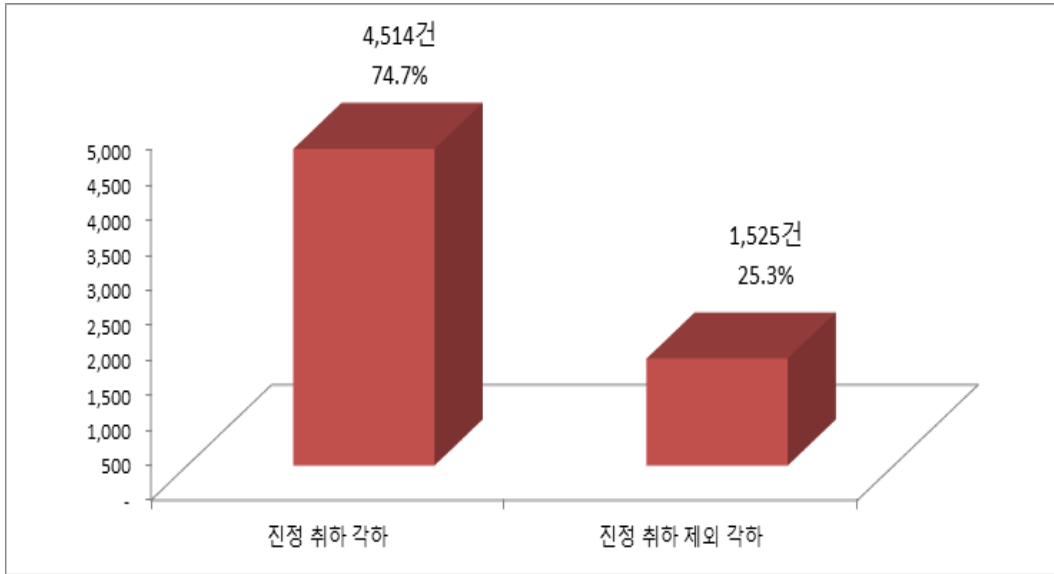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1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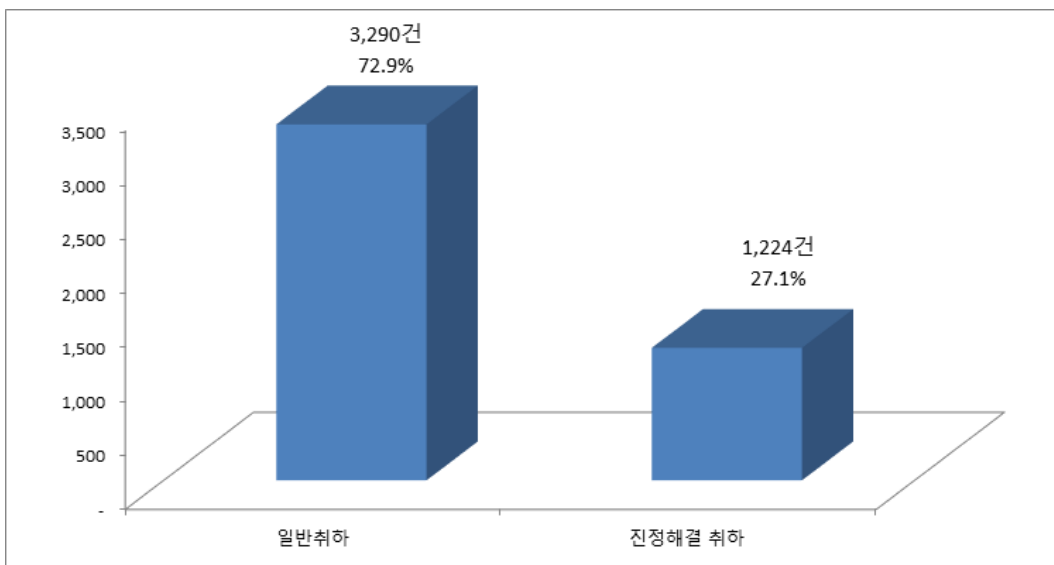
나. 각하사건 중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현황 (2008.04.11.~2017.12.31.)

(단위: 건, %)

각하 처리건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8호)		
	6,039	4,514	
취하 구분		일반취하	진정해결 취하
사건수		3,290	1,224
취하사건중 해결 %		72.9%	27.1%



[그림 11] 각하 사건 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 ~ 2017.12.31.)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 ~ 2017.12.31.)



**붙임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7	16-직권-0002400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28	17-직권-00004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9	17-직권-000130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붙임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7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7)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고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 의 “20.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7)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 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p> <p>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p> <p>일정기준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p> <p>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7)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지역순회 토론회(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7),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li> <li>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li> <li>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li> <li>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li> <li>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li> </ol>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에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li> <li>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li> <li>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li> <li>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li> <li>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li> <li>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ol>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다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구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통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국민안전처 장관에게,</p> <p>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p> <p>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p> <p>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p>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p> <p>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p> <p>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p> <p>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2.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p>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p>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p>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lt;추가&gt;「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lt;추가&gt;「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lt;추가&gt;「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lt;추가&gt;「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lt;추가&gt;「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lt;추가&gt;「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3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lt;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gt;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p>2. (주)000, (주)00백화점, 00쇼핑(주), (주)00리테일, (주)0000, (주)000, 00000유통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lt;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gt;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44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교육부장관에게,  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하기 바람.</p> <p>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p> <p>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기 바람.</p>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 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p> <p>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바람.</p> <p>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6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바랍.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가.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나.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 ‘HIV/AIDS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및 ‘HIV/AIDS 감염인의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랍. 3.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랍.
47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편의시설설치대상 시설에포함될수있도록, <별지1>을참고하여「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별표1]과[별표2]를개정하기바랍.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아니거나또는편의시설을설치하기가구조적으로곤란한 경우에도장애인의접근, 이용이가능한위치에서장애인에개인적서비스제공등대안적조치가강구될수있도록, <별지2>를참고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8조를개정하기바랍.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 라.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 2. 기획재정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투자비용외에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위해투자한비용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하며, 건물구조변경및세부기준적합등세액공제요건이완화될수있도록「조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9]를개정하기바랍. 3. 행정안전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투자비용외에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위해투자한비용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을개정하기바랍.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p>4. 국토교통부장관은,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lt;별지 3&gt;을 참고하여 「도로법」 제68조를 개정하기바람.  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실무교육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기바람.  5. 시·도지사는,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바람.  나.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48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2017)	<p>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함.</p>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 접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추가하고 관광시설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 관련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도 차별 행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2017. 2. 14.)</p>
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 전 당사자 및 가족, 정신의료기관, 시설관계자 등이 언론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자·타해 위험 기준의 보완’, ‘행정입원 시 요건강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항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1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교육부장관이 2017. 4. 11.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i> <li>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li> <li>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i> </ol>
52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li>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li> </ol>
5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 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함</p>

### 붙임3. 장애차별 진정사건 주요 권고현황(2008.04.11 ~ 2017.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지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신과질환 사회복지무원 소집 순위차별 (16진정1022500)	-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7.4.3	일부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764100)	-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7.4.3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등 (16진정10382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017.3.6	검토중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 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 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 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 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 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9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 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 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 정 할 것	2014.11.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12.16.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폭행피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진정0860000)	- 사회복지법인 00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급에 대한 하절기 냉방장치 미가동에 의한 차별 (17진정0627100)	- 00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편의 미제공 등 (16진정0644000)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 -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검토중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 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4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축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 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 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6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제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 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경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경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 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 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경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제금융회사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 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 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 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 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17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2010.10.20.	일부 수용
18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 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 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거나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 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 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 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 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 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 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li> <li>-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5.17.	일부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ul>	2011.5.17.	수용
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6.30.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li> <li>-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6.30.	수용
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li> <li>-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li> </ul>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2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 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 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 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을 권고	2011.7.22.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 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34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 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 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 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 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 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 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 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범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 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제심사 할 것과, 보 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 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료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 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할 것을 권고	2012.5.1.	일부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 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 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 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 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 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 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 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9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li> <li>-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li> </ul>	2012.7.18.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li> <li>-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2.7.18.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li> </ul>	2012.8.22.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li> </ul>	2012.8.22.	수용
54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li> </ul>	2012.11.29.	불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 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 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교육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동등하게휴폐이자를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할 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5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 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탈의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5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위원회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 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 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 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 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 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 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 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 의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 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 련하여 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 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 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 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 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구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장애인,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 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 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 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	2015.9.18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 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 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 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바코드 생성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 면서 동시에 사 본 내용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 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과 산하기관의 점자 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12.28	수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5진정0349900)	-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 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10.5	검토중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5464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6.8.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 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 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 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12.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12.7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을 이유로 한 차량렌탈 거부 (16진정06923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제한 (14진정0887600)	-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2016.4.22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14진정0887500)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56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16.11.14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59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택 임대사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금 및 생계급여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70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하기 바람	2016.10.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6200)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16진정02227100)	-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2016.5.13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사무실 임대 거부 (17진정0861100)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12.1	검토중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16진정096240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보험심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험인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2017.12.1	검토중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위반 등 장애인차별 (17진정0146600)	- 아파트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4DX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6진정0134300)	- 중증장애인의 4DX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 - 4DX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2017.10.31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등 장애인 차별 (17진정0709700)	- 00아파트 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6676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 련할 것을 권고	2017.7.3	일부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4063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불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2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 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 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등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 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 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 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 할 것 등을 권고	2011.1.6.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 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 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 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 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 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 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 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 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 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 병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 실치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 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간호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 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 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 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 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의 직원들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11.19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식품제조업체 상사의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7진정0662500)	-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9.12	검토중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학교수의 장애인 비하 발언 (17진정0270400)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차별 (17진정0169100)	-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한국00000공단 00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6.12	수용

---

##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토론회

- 20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념 -

---

| 인 쇄 | 2018년 4월

| 발 행 | 2018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2층

| 전 화 | (02) 2125-9968 | F A X | (02) 2125-092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978-89-6114-620-3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